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6.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2월 1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8년 2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3.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언어권리 신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안 제4조)
-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지원 규정(안 제5조~제6조)

○ 포상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의 편의증진 및 복리를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이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와 언어권리 신장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조례안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 안 제3조는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과, 수화언어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화언어 통역 지원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에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공적이 큰 구민 표창 등을 규정함.

○ 2018.1월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청각, 언어장애인은 1,970명으로 전체 등록된 장애인수 14,333명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음.

○ 이들은 현재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대신해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그동안 이들은 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도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정부에서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으로 농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6.2.3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여 한국수화언어의 교육·보급 등 다양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정책 시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실효성 있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한국수

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은 청각, 언어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 사회 참여권 등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 340 호
----------	---------

제출연월일 : 2018.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청각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편의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다.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장애인복지법」
- 2) 「한국수화언어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17.10.19. ~ 1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영등포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및 영등포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